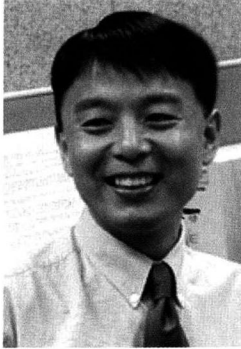


#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역할



임 영 주  
한국PL센터 소장

이미 오래 전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소비자간의 많은 논란을 가져온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라 칭함)법이 소비자의 주권 확보라는 논리에 밀려 약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1일부로 국내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확대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인 것이다.

현재 PL법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세계적으로 약 30여개 국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법으로 제정 또는 시행하고 있다.

본 지면에서는 PL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주권이 확대되며 기업의 제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증가되고, 따라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보다는 법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PL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PL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업과 소비자 및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해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PL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코자 할 경우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자 및 피해자 모두

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업종별 또는 제품 분야별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 3자가 분쟁의 사안에 대해 중립적 의견이나 판단으로 분쟁 당사자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송 전(前) 단계에서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제 3자에 의한 분쟁처리기관이라는 의미의 영문이니셜로서 ADR기관(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ilities)이라고도 한다.

둘째, 이들 분쟁조정기구의 조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제조물의 결함원인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원인규명기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제품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의견만으로는 제품의 결함 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원인규명기관에 의한 전반적인 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다.

제조물의 결함에 있어 원인규명업무는 PL사고의 사후적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사전예방과 동종,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원인규명기관은 대외적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의 경우 PL법 관련 원인규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간 거래에 있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부의 시험연구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PL법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업종별, 제품분야별 원인규명기관의 설립 및 체제정비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로는 향후 자발적으로 신설될 분쟁조정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제품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여 결함제품에 대한 감정 등을 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고액의 원인규명을 행하지 않아도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인력을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능력 또한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관련활동을 꾸준히 시행해 온 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PL법 시행에 앞서 체제를 정비하고 준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방재시험연구원의 경우 현재는 소방기구, 건축구조 및 재료,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PL법에 대비하여 관련 제품분야에 대한 제조물의 설계, 제조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경고·표시상의 결함 등도 규명할 수 있는 원인규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